

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5의5] <개정 2026. 1. 6.>

6·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(제27조의3제7항 관련)

지급 구분	월 지급액
1.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.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	기본급: 1,779천원 위로가산금: 80천원
3.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	기본급: 1,513천원
4.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	기본급: 657천원 추가지원금: 114천원(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)

비고

- 보상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금을 말한다.
-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수당의 분할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.
 -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급과 위로가산금을 합산한 총액을 분할하여 지급한다.
 -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급을 분할하여 지급하되, 추가지원금은 지급대상인 경우에만 개별 지급한다.
 -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.